

【 8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4. 2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자연발생 유원지내 각종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
-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자연발생 유원지내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 변경, 물품판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
- 나. 자연발생 유원지내 행위시 군수 허가조항 삭제에 따라 허가취소, 권리의 양도금지 조항 삭제(안 제7조, 제8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허가) 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1. 부지의 사용</p> <p>2.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p> <p>3. 물품판매 등 상행위</p> <p>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p>	(삭제)
<p>제7조(허가취소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p> <p>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p> <p>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p> <p>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p> <p>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질서 행위를 문란케 한 때</p> <p>6.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p>	(삭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권리양도의 제한)</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u>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u> <u>서는 아니된다.</u></p>	(삭제)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第9條 및 第10條 刪除 (95·8·4)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착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該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刪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は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별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環境部令이 정하는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1990. 9. 7]
[조례 제1331호]

개정 1991.12.31 조례 제1396호
 " 1993. 8. 6 조례 제1458호
 " 1993.11.25 조례 제1466호
 " 1997. 5. 6 조례 제161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 3 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중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4 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제5편 종무 제6장 국민운동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다.

제 5 조(관리) ① 자연 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 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용허가) ① 자연 발생유원지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

3. 물품 판매 등 상행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 7 조(허가취소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질서 행위를 문란케 한 때

6. 기타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 8 조(권리양도의 제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지와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오손 또는 공공시설을 채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수수료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자에게 대하여는 제9조 제2항 “별표 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

제5편 총무 제6장 국민운동 양주군자연발생유·원자 관리조례

과 양주군일 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9. 7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31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6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수료의 요율표(제 9 조제 2 항 관련)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 참고: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이상인 자
2. 소인 :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

제5편 총무 제6장 국민운동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지 정 관 광 지	명 칭	
	위 치	
사 용 물	사 용 둘 명	
	위치및면적	
	사 용 방 법	
특별시설및설비개요		
사 용 기 간		
기 타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주 군 수 귀하		

제5편 총무 제6장 국민운동 양주군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지정관광지	명칭			
	위치			
사용물	위치			
	면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19 . . . ~ 19 . . .			
사유				
기타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양주군수				

(총 2)

734-46